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업 경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, 면세석유류 등 적용대상 농·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고,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, 면세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 연료유(副生燃料油)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17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
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중유”를 “중유, 부생연료유(副生燃料油)”로
한다.

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에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3. 소초(巢礎)

54. 소광대

55. 사양기(飼養器)

56. 격리판

별표 5 제6호 중 “지주목·광망·차광지”를 “지주목·광망·차광지·거
적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6호 중 “(驅動機類)·복합환경제어기”를 “(驅
動機類)·복합환경제어기·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를 농기계 등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이 영 시행 전에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별표 2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농·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제6호 및 제6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농·임·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상의 농업·작물재배업·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농민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. 1. ~ 10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제2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단서 삭제> 1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농·임·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	제14조(농·임·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농어민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·축산업·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농민”이라 한다)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)	제17조(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)
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선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농업용 트랙터, 농업용 콤팩	1. -----

인, 농업용 난방기, 농선(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, 버섯재배소독기,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. 다만, 농업용 난방기, 버섯재배소독기,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, 중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26